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7. 9. 5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3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9. 1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영등포구 체육시설(스포츠센터) 이용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·확대하고,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·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 및 확대
  -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 
(안 제9조제2항제5호, [별표2 제 6호 마목])
  - 장기등록회원에 대한 감면기준 확대([별표2제5호])

- 사용료 선납에 따른 사용료 감면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 정리
  - 조례 제8조(사용료의 징수)제2항 중 “별표 2 및 별표 3”을 “별표 2”로, 제3항을 “대림운동장 사용료는 별표3과 같다”로 변경 (안 제8조제2항, 안 제8조제3항)
  - 기타 용어정비
    - “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 → 체육시설(안 제1조)
    - 정의는 다음 각 호와 → 뜻은 다음과(안 제2조)
    - 각호의1 → 각 호의 어느 하나(안 제4조제3항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이 개정 조례안은, 구민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다자녀 가정 구성원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, 장기등록 회원에 대한 감면기준을 확대하여 이용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체육시설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,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
  - 안 제9조 제2항 제5호 및 별표2의 제6호 마목에는 “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”로 영등포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,
  - 안 별표2 제5호는 “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”를 “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~ 감면할 수 있다”로 영등포스포츠센터 장기등록회원에 대한 감면기준을 확대하였음.
- 검토결과, 이용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체육시설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,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사용료 감면액은 총 5억3천만원이

있으며,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30% 감면 신설에 따른 감면 예상액은 약 6천만원, 장기회원 감면 확대에 따른 감면 예상액은 약 7백70만원으로 도합 6천7백70만원이 추가로 재정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수익률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4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다자녀 가정에게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, 체육시설 장기등록 회원에 대한 사용료 감면기준을 확대하여 구민의 부담을 줄이고, 공공체육시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다자녀가정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(안 제9조)
- 나. 체육시설 장기등록 회원에 대한 감면기준 확대 (안 별표2)
- 다.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· 성별영향분석평가 ·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7.27. ~ 8.14. / 18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”을 “체육시설”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 다음 각 호와”를 “뜻은 다음과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별표 2 및 별표 3”을 “별표 2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대림운동장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.

제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다음”을 “구청장은 다음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4를 삭제한다.

부 칙

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(제3조 관련)**

시 설 명	위 치	규 모	주요 시설
영등포 제1스포츠센터	영등포구 신풍로 1(신길동)	지하 2층/지상 3층 연면적 9,131㎡	수영장, 골프연습장, 체육관, 헬스장, 에어로빅장, 유아체육시설, 다목적체육실, 문화강좌실
영등포 제2스포츠센터	영등포구 국회대로 615(당산동4가)	지하 3층/지상 5층 연면적 6,674㎡	수영장, 체육관, 헬스장, 에어로빅장, 유아체육시설, 다목적체육실, 문화강좌실
대림운동장 체육시설	영등포구 가마산로31길 16(대림동)	16,498㎡	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축 구 장 1면 테 니 스 장 3면
양평동 체련장	양평동5가 128-1	1,628㎡	농 구 장 1면
대방천 체련장	신길3동 376	4,243㎡	게이트볼장 1면
당산2동 배드민턴장	당산동6가 91-34	564㎡	배드민턴장 4면
양평2동 배드민턴장	양평동5가 128	240㎡	배드민턴장 3면
도림동 배드민턴장	도림동 265	320㎡	배드민턴장 4면
안양천 체육시설	신정교~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(문래동)	30,508㎡	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농 구 장 1면 축 구 장 1면 축 구 장 3면
	오목교~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(양평1동)	5,300㎡	게이트볼장 7면 축 구 장 2면
	양평교~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(양평2동)	17,448㎡	축 구 장 1면 축 구 장 2면 게이트볼장 1면
도림천 체육시설	둔치체육시설(도림동)	540㎡	농 구 장 1면
유수지 체육시설	도림동 유수지	14,000㎡	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
	대림3동 유수지	16,128㎡	조깅트랙 1면 인라인트랙 1면 인라인보조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 배구장 겸 족구장 1면
	신길 유수지	3,679㎡	조깅트랙 1면 배드민턴장 2면 농 구 장 1면

##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(제8조제2항 관련)

### ○ 개인사용료

(단위 : 원)

사용료 구분	대 상	기본사용료 (1회) 상한	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(1시간 기준)					
			주1회	주2회	주3회	주4회	주5회	주6회
수영장	성 인	4,000	16,000	32,000	48,000	56,000	64,000	72,000
	청소년	3,000	12,000	24,000	36,000	42,000	48,000	56,000
	어린이	2,500	10,000	20,000	30,000	35,000	40,000	45,000
골프 연습장	성 인	6,000	월 120,000					
	청소년 (어린이)	5,000	월 100,000					
체력 단련장	성 인	2,500	월 50,000					
	청소년 (어린이)	2,000	월 40,000					
체육관	성 인	3,000						
	청소년	2,000						
	어린이	1,500						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, 실내골프장,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.</li> <li>2.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</li> <li>3. 토·일·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.</li> <li>4.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li> <li>5. <b>3개월 이상</b>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li> <li>6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</li> <li>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(1~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</li> <li>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</li> <li>라. 「노인복지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</li> <li>마.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</li> </ul> </li> <li>7.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.</li> <li>8.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</li> <li>9.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</li> <li>10.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.</li> </ol>							

○ 전용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분 \ 사용료	대 상	대관료	비 고
체육관	체육경기	150,000	-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,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.
	기 타	300,000	
수영장	체육경기	280,000	-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,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.
	기 타	560,000	- 동절기(11월~2월)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.
비 고	<p>1.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.</p> <p>가. 토·일·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.</p> <p>나.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.</p> <p>2.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</p> <p>3. 영등포스포츠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.</p> <p>나.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.(단,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)</p> <p>4.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</p>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<u>체육시설(이하 “체육시설”이라 한다)</u>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국민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체육시설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<u>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<u>뜻은 다음과</u>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사용허가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. 다만 그 이외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</p> <p>③ <u>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4조(사용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사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. &lt;후단 삭제&gt;</p> <p>③ 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사용료의 징수) ① (생략)</p> <p>② <u>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제8조(사용료의 징수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별표 2에서</u> ----- ----- -----.</p>

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.

④、⑤ (생략)

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생략)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〈신설〉

③、④ (생략)

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16조(체육시설의 관리、운영의 위탁) ① ~ ③ (생략)

④ 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의 규정을 적용하나, 제3항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선정 절차를 생략한다.

③ 대림운동장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.

④、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와 그 자녀

③、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 ①

구청장은 다음-----  
-----  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체육시설의 관리、운영의 위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-----  
-----  
-----.

[별표 1]

**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시설(제3조 관련)**

시 설 명	위 치	규 모	주요 시설
영등포 구민체육센터	신길동 426-3 (신길근린공원 내)	지하2층/지상 3층 연면적 9,131㎡	수영장, 골프연습장, 체육관, 헬스장, 에어로빅장, 유아체육시설, 다목적체육실, 문화강좌실
대림운동장 체육시설	대림3동 780	16,498㎡	배드민턴장 2면, 농 구 장 1면, 게이트볼장 2면, 축 구 장 1면, 테 니 스 장 3면
양평동 체련장	양평동5가 128-1	1,628㎡	농 구 장 2면
대방천 체련장	신길3동 376	4,243㎡	게이트볼장 1면
당산2동 배드민턴장	당산동6가 91-34	564㎡	배드민턴장 4면
양평2동 배드민턴장	양평동5가 128	240㎡	배드민턴장 3면
도림동 배드민턴장	도림동 265	320㎡	배드민턴장 3면
안양천 체육시설	신정교~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 (문래동)	30,508㎡	인라인스케이트장 1면, 농 구 장 1면, 축 구 장 3면
	오목교~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 (양평1동)	5,300㎡	배드민턴장 5면, 게이트볼장 4면, 축 구 장 2면
	양평교~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 (양평2동)	17,448㎡	축 구 장 1면, 축 구 장 3면
도림천 체육시설	둔치체육시설 (도림동)	540㎡	농 구 장 1면
유수지 체육시설	도림동 유수지	12,105㎡	조깅트랙 1면, 인라인트랙 1면, 인라인보조트랙 1면, 배드민턴장 2면, 농 구 장 1면, 배구장 겸 족구장 1면
	대림3동 유수지	11,450㎡	조깅트랙 1면, 인라인트랙 1면, 인라인보조트랙 1면, 배드민턴장 2면, 농 구 장 1면, 배구장 겸 족구장 1면
	신길 유수지	2,670㎡	조깅트랙 1면, 배드민턴장 2면, 농 구 장 1면

[별표 1]

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(제3조 관련)**

시 설 명	위 치	규 모	주요 시설
영등포 제1스포츠센터	영등포구 신풍로 1 (신길동)	지하2층/지상 3층 연면적 9,131㎡	수영장, 골프연습장, 체육관, 헬스장, 에어로빅장, 유아체육시설, 다목적체육실, 문화강좌실
영등포 제2스포츠센터	영등포구 국회대로 615 (당산동4가)	지하3층/지상 5층 연면적 6,674㎡	수영장, 체육관, 헬스장, 에어로빅장, 유아체육시설, 다목적체육실, 문화강좌실
대림운동장 체육시설	영등포구 가마산로31길 16(대림동)	16,498㎡	배드민턴장 2면, 농 구 장 1면, 게이트볼장 2면, 축 구 장 1면, 테 니 스 장 3면
양평동 체련장	양평동5가 128-1	1,628㎡	농 구 장 1면
대방천 체련장	신길3동 376	4,243㎡	게이트볼장 1면
당산2동 배드민턴장	당산동6가 91-34	564㎡	배드민턴장 4면
양평2동 배드민턴장	양평동5가 128	240㎡	배드민턴장 3면
도림동 배드민턴장	도림동 265	320㎡	배드민턴장 4면
안양천 체육시설	신정교~오목교구역 둔치체육시설 (문래동)	30,508㎡	인라인스케이트장 1면, 농 구 장 1면, 축 구 장 1면, 축 구 장 3면
	오목교~목동교구역 둔치체육시설 (양평1동)	5,300㎡	게이트볼장 7면, 축 구 장 2면
	양평교~양화교구역 둔치체육시설 (양평2동)	17,448㎡	축 구 장 1면, 축 구 장 2면, 게이트볼장 1면
도림천 체육시설	둔치체육시설 (도림동)	540㎡	농 구 장 1면
유수지 체육시설	도림동 유수지	14,000㎡	조깅트랙 1면, 인라인트랙 1면, 인라인보조트랙 1면, 배드민턴장 2면, 농 구 장 1면, 배구장 겸 족구장 1면
	대림3동 유수지	16,128㎡	조깅트랙 1면, 인라인트랙 1면, 인라인보조트랙 1면, 배드민턴장 2면, 농 구 장 1면, 배구장 겸 족구장 1면
	신길 유수지	3,679㎡	조깅트랙 1면, 배드민턴장 2면, 농 구 장 1면

[별표 2]

**구민체육센터 개인사용료(제8조제2항 관련)**

(단위: 원)

사용료 구분	대 상	기본사용료 (1회) 상한	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(1시간 기준)					
			주1 회	주2 회	주3 회	주4 회	주5 회	주6회
수영장	성 인	4,000	16,000	32,000	48,000	56,000	64,000	72,000
	청소년	3,000	12,000	24,000	36,000	42,000	48,000	56,000
	어린이	2,500	10,000	20,000	30,000	35,000	40,000	45,000
골프 연습장	성 인	6,000	월 120,000					
	청소년 (어린이)	5,000	월 100,000					
체력 단련장	성 인	2,500	월 50,000					
	청소년 (어린이)	2,000	월 40,000					
체육관	성 인	3,000						
	청소년	2,000						
	어린이	1,500						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, 실내골프장,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.</li> <li>2.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</li> <li>3. 토·일·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.</li> <li>4.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li> <li>5. 6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li> <li>6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</li> <li>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(1~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</li> <li>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</li> <li>라. 「노인복지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</li> </ul> </li> <li>7.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.</li> <li>8.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</li> <li>9.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</li> <li>10.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.</li> </ol>							

[별표 2]

**영등포스포츠펀터 사용료(제8조제2항 관련)**

○ 개인사용료

(단위: 원)

사용료 구분	대 상	기본사용료 (1회) 상한	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상한(1시간 기준)					
			주1 회	주2 회	주3 회	주4 회	주5 회	주6회
수영장	성 인	4,000	16,000	32,000	48,000	56,000	64,000	72,000
	청소년	3,000	12,000	24,000	36,000	42,000	48,000	56,000
	어린이	2,500	10,000	20,000	30,000	35,000	40,000	45,000
골프 연습장	성 인	6,000	월 120,000					
	청소년 (어린이)	5,000	월 100,000					
체력 단련장	성 인	2,500	월 50,000					
	청소년 (어린이)	2,000	월 40,000					
체육관	성 인	3,000						
	청소년	2,000						
	어린이	1,500						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체육관의 사용료는 수영장, 실내골프장, 체력단련장 등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로 한다.</li> <li>2. 수영장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</li> <li>3. 토·일·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.</li> <li>4. 2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li> <li>5.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</li> <li>6.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</li> <li>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.(1~3급은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</li> <li>다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</li> <li>라. 「노인복지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</li> <li>마.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.</li> </ul> </li> <li>7.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.</li> <li>8. 사용료의 중복할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</li> <li>9.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</li> <li>10.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고시할 수 있다.</li> </ol>							

○ 전용사용료

(단위:원)

사용료 구분	대상	대관료	비 고
체육관	체육경기	150,000	-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,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.
	기타	300,000	
수영장	체육경기	280,000	-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,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.
	기타	560,000	- 동절기(11월~2월)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.
비 고	<p>1.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.  가. 토·일·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.  나.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.</p> <p>2.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</p> <p>3. 영등포 스포츠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.  가.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.  나.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.  (단,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)</p> <p>4.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</p>		

[별표 4]

**구민체육센터 전용사용료(제8조제3항 관련)**

〈삭제〉

사용료 구분	대상	대관료	비 고
체육관	체육경기	150,000	- 체육관은 기본인원 5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1,5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.
	기타	300,000	
수영장	체육경기	280,000	- 수영장은 기본인원 70명 초과시 초과인원 1명당 2,000원을 추가하여 징수한다.
	기타	560,000	- 동절기(11월~2월) 수영장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.
비고	<p>1.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가산한다.</p> <p>가. 토·일·공휴일은 1회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.</p> <p>나.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가산한다.</p> <p>2. 기본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는 1시간당 1회 기본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고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</p> <p>3. 구민체육센터 사용료 중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.</p> <p>가. 영등포구 주관 및 구청장기 대회 등 행사 개최시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.</p> <p>나. 생활체육회 소속 연합회단체 주관행사 등의 개최시는 100분의 80을 감면한다. (단, 단체별 연 1회로 한정한다)</p> <p>4.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.</p>		